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자료출처 / 대한민국 관보 제12568호

◎상공자원부령 제18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3년 11월 16일

상공자원부장관 ㉔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7조 가목중 “용량 5천킬로와트이상”을

“용량 5천킬로와트(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의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이상”으로 한다.

제31조중 “수력발전설비,”를 “출력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설비,”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100킬로와트미만”을 “500킬로와트미만”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100킬로와트미만”을 “300킬로와트미만”으로 한다.

제62조의 표중 지역 또는 전기설비란의 제3호중 “300킬로와트이하”를 “500킬로와트이하”로 한다.

[별표 8]중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기	전기안전관리사	1. 전기분야 기술사자격소지자 2. 전기기사 1급자격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전기적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2급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적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
		4. 전기기사 1급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5. 전기기사 2급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전압 10만 볼트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적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
		※ 비교 :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의 기술인력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